

제343회 임시회
2015.10.21.(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10.2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 양 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5년 10월 02일

다. 회부일자: 2015년 10월 05일

라. 상정일자: 2015년 10월 19일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양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의 교육감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교원단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2)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3)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반기환)

-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 5. 28. 공포, 2015. 1. 1. 시행)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2조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교원단체에 대하여 교육감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3조에는 교원단체의 범위를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교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지방교육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첨부서류: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원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교원단체의 범위) “교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주된 사무실을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교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충청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받으려는 교원단체는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원단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원단체는 교육감의 보완요구를 수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완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교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준용) 교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원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교직원단체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원
- 교직원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
-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직원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관련 조문

-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교원 전문성 신장사업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교원 교육활동 여건 조성 사업	9,000	9,000	9,000	9,000	9,000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직원단체의 공동추진사업	0	0	0	0	0	사업발생시 보조금 지원
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나.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진로인성교육과 교원단체담당 이병래
연락처	043-290-229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세입	-	-	-	-	-	-	-
	소계						
세출	교원 전문성 신장사업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교원 교육활동 여건 조성 사업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직원단체의 공동추진사업	0	0	0	0	0	0
	소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재원 조달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국 비							
시비	소 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27,000	27,000	27,000	27,000	27,000	135,000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